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주요 개정 내용

□ 과징금 산정 과정

과징금 위반 산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법 위반전력 등에 따른 가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른 감경을 통해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정과징금 상한범위

법 위반행위시	조정과징금 상한 범위	
	종전	개정
자진시정 경우	2배	3배
자진시정 안한 경우	4배	5배

□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함

□ 시행

- 1월 1일부터 시행
-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적용

□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

과징금 감경혜택	개정	개정 이유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폐지	- 현금성결제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해 인센티브가 별점감경과 과징금 감경에 중복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가이드라인당 20%→5% 축소	- 별점은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과징금 가중,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등의 기준이 되므로 별점 감경만으로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됨